

제339회 임시회  
2015. 4. 30.(목)

#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설치·운영 조례안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1. 충청북도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설치운영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박봉순 의원 등 7명

나.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5년 4월 13일
- 회부일자 : 2015년 4월 14일

다. 상정일자 : 2015년 4월 23일

- 제3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정책복지위원회 박봉순 의원)

가. 제안이유

- 충청북도의 미래 100년 준비를 위해 지역 경제를 지속 발전시킬 수 있는 중장기 과제를 발굴, 선정, 기획, 자문하기 위한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을 설치·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나. 주요내용

가. 미래과제의 발굴·선정·조사·자문을 위한 “충청북도 미래100년 준비 지원단” 설치 (안 제3조)

나. 지원단의 기능 (안 제4조)

- 충북 미래과제 발굴, 선정, 사업기획, 조사, 용역수행, 자문 등

다. 지원단 구성 (안 제5조)

- 단장: 미래전략기획단 업무 관장 부지사
- 단원: 산학연관 전문가, 도내 소재 정부 기관단체 담당자 등(50명 이내)
- 미래과제 기획화를 위한 과제별 태스크포스팀 구성·운영

라. 사업기획 용역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단원, 외부전문가와의 수의계약 (안 제10조)

마. 단원, 외부전문가, 태스크포스팀원에 대한 기획연구비, 자문료 등 필요 경비 지급 (안 제11조)

## 3. 검토보고 요지

(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 맹정호)

- 본 제정안은 충북 지역 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기획 과제를 발굴·선정·조사·자문 등 일련의 역할 수행을 위한 ‘충청북도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올 해 1월 신설된 미래전략기획단의 효율적 활동 촉진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례임.
- 본 조례안은 총 12개 조로 구성되어 있음.

- 안 제2조에서는 ‘미래과제’의 의미를 ‘지역경제를 지속 발전시킬 수 있는 중장기 기획과제로 정의하였고,
  - 안 제4조의 지원단의 기능은 미래과제를 직접 발굴하거나 그 밖의 경로를 통해 취합된 아이디어 중 미래과제를 선정·자문하며, 선정된 미래과제의 현실화를 위해 사업기획, 조사 및 용역을 수행토록 명시하였음.
  - 안 제5조 지원단 구성에서는 단장을 미래전략기획단 업무 관장 부지사(現, 정무부지사)로 하고, 단원은 거버넌스 차원에서 민·관 전문가 50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특히 과제별로 필요한 경우 관련 외부전문가가 추가로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운영하여 과제 기획단계에서의 전문성 및 집중도를 높이고자 함.
  - 안 제9, 10조는 지원단 및 태스크포스팀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또한 용역수행이 필요한 미래과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원 또는 외부 전문가와의 용역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명시함.
  - 안 제11조는 단원, 외부전문가, 태스크포스팀원의 회의참석 수당·여비와 미래과제의 제안·기획·조사·자문 역할수행에 대한 필요 경비의 지급 근거를 명시함.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규정된 법령의 범위 안에서, 도 내 담당부서인 미래전략기획단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성안된 것으로, 내용 및 법리적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설치·운영조례안 1부.

## 충청북도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설치·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래과제”란 지역 경제를 지속 발전시킬 수 있는 중장기 기획과제를 말한다.
2. “외부전문가”란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하여 미래과제를 제안·기획·조사·자문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단 설치)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미래과제의 발굴·선정·조사·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해 충청북도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둔다.

제4조(기능)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충북 미래과제 발굴
2. 다양한 경로를 통해 취합된 아이디어 중 미래과제 선정·자문
3. 미래과제의 사업기획, 조사, 자문 및 용역수행
4. 그 밖에 미래과제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요구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미래전략기획단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도 미래발전과 관련 있는 산·학·연·관 전문가
2. 미래과제 발굴·선정·기획·실행 전문가
3. 도내 소재 정부 기관·단체(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다) 관련 담당자
4.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전문가 등

③ 단장은 필요시 미래과제의 기획화를 위해 단원 또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제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6조(임기 및 위촉해제)** ①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단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단원의 개인사정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의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단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7조(단장의 직무 등)** ① 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고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 또는 태스크포스팀의 효율적인 기능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 또는 태스크포스팀원에게 미래과제를 제안·기획·조사·자문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간사)** 지원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미래전략기획단장이 된다.

**제9조(회의 등)** ① 지원단 또는 태스크포스팀 회의는 단장이 필요한 때에 소집한다.

② 단장은 지원단 및 태스크포스팀의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사업기획용역 등) ① 단장은 사업기획용역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원 또는 외부전문가와의 용역 수의계약을 의뢰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사업기획용역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관계공무원은 단장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① 지원단 또는 태스크포스팀 회의에 참석한 단원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도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

② 단원, 외부전문가 또는 태스크포스팀원이 미래과제를 제안·기획·조사·자문하는 경우에는 기획연구비, 자문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지원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발췌

###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재무상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지명기준 및 지명절차,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수의계약상대자의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차.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영 제108조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4호 내지 제6호는 계약규모에 관계없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 4. 영 제25조제4호차목에 따른 특정인과의 학술용역계약

5.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 충청북도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설치·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 1. 사업개요

- 충북 미래 100년 프로젝트 아이템 발굴 및 과제 선정 전문가 그룹 필요와 충북경제 4% 달성을 견인하고 충북미래 지속성장기반 네트워크 구축
  - 준비 지원단, 현안사업 태스크포스팀, 외부전문가 등 운영

### 2. 비용 발생 요인

- 준비 지원단 운영경비(출석·안전심사·원거리출석수당, 기획연구비 등)
- 태스크포스팀 운영경비(출석·안전심사·원거리출석수당, 기획연구비 등)
- 외부전문가 활용경비(제안·기획·조사·자문비 등)

### 3. 관련조문

- 충청북도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설치·운영 조례 제11조(수당 등)

### 4.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준비 지원단 운영경비(30명) 및 분기 1회 개최
- 현안사업 태스크포스팀 운영경비(5명)
- 외부전문가 활용경비(10명)

#### 나. 추계 결과

- 준비 지원단 운영경비 : 46,030천원
- 현안사업 태스크포스팀 운영경비 : 22,050천원
- 외부전문가 활용경비 : 3,000천원

####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 100%

###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 6. 작성자 : 미래전략기획단장 이 두 표

##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계
세 입						
세 출	71,055	71,055	71,055	71,055	71,055	355,275
준비지원단 및 현안 태스크포스팀 운영	68,055	68,055	68,055	68,055	68,055	340,275
외부전문가 활용 기획비	3,000	3,000	3,000	3,000	3,000	15,000
재원 조달	71,055	71,055	71,055	71,055	71,055	355,275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71,055	71,055	71,055	71,055	355,275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시.군비						
기 타 (민간 자부담)						